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와 보험자의 면책에 관한 쟁점

강 대 섭*

目 次

- | | |
|----------------------------------|----------------------------------|
| I. 서 론 | III.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자살과
보험자의 면책 |
| II.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와
보험자면책의 법리 개관 | IV.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
| | V. 결 론 |

I. 서 론

보험계약은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 보험계약은 사행계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위험이 상존하고 이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은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고의와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보험에서는 고의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의 면제가 문제되고 있지만, 증명책임의 문제라든지 유족의 보호 차원에서 고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보험사기)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¹⁾ 보

┃ 투고일자 : 2021년 11월 12일, 심사일자 : 2021년 12월 10일, 게재확정일자 : 2021년 12월 22일.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험사기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상법도 보험제도의 악용 또는 도덕적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정하고 있다. 사망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에 의하여 사망한 것인지가 다투어지면서 보험금 지급 여부가 문제되는 여러 개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고의로 인한 보험자 면책의 법리는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²⁾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생명보험자의 면책사유의 예외로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의 증명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³⁾ 사망보험자의 면책사유로서 자살의 증명 정도에 관한 선례로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를 면책시키는 법리의 이론적 근거 또는 존재이유를 검토하고,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치거나 사망하게 하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는 법리의 타당성과 그 한계를 검토한다.

1)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를 이와 같은 행위로 정의하고, 보험사기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동법 제2조 제1호 및 제8조).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2.7.13. 선고 82도874 판결). 최준선, 『보험·해상·항공운송법(제10판)』, 삼성사, 2016, 136면 참조.

2)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승용차를 바다로 밀어 차 안에 타고 있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던 50대 남편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적용해 금고형을 선고한 예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건 발생 20일 전인 2018년 12월 10일에 사망한 아내와 재혼하였는데, 결혼 전 사망한 아내와 사귀던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거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아내와의 혼인 신고 후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었다. 1심에서는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하였음이 인정되었으나, 항소법원은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승용차가 저절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아내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바다로 밀어 아내를 살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NEWSIS, “보험금 노려 아내 탄 차 바다에 빠뜨린 50대 살인혐의 무죄(종합)”,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422MW163750985487> <2021.11.20., 검색>; news1 뉴스, “보험금 노려 아내 탄 차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https://www.news1.kr/articles/?3721434> <2021.11.20. 검색>. 또한 최근 유사한 사건에서 보험금을 노린 교통사고로 아내를 살인하였다는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유가족이 제기한 여러 건의 보험금지급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NEWSIS, “‘아내살인 무죄’ 남편 보험금 소송…이번엔 “지급해야” 승소 왜?”,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03_0001675609&cID=10201&pID=10200 <2021.11.20. 검색>.

3) 대법원 2021.2.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II.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와 보험자면책의 법리 개관

1.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

상법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고가 생긴 경우 그 발생 원인을 불문하고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되, 보험자의 면책사유로서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적용되는 통칙 규정으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상법 제659조 제1항. 이하에서는 ‘상법’을 생략한다). 이 경우 경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져야 하고 지급할 보험금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못한다.⁴⁾ 반면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여(제732조의2 제1항), 인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에 준용된다(제739조와 제739조의3).

이 규정을 둔 이유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⁵⁾ 먼저 우연성결여설을 들 수 있다. 우연성결여설은 보험사고는 불확정한 사고이어야 하는데, 즉 사고의 발생 여부나 발생 시기가 우연한 것이어야 하는데,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이와 같은 불확정성을 결여하므로 보험사고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보험자는 이와 같은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⁶⁾ 이 견해는 비록 중과실이기는 하지만 과실로 인한 사고도 우연성을 결한다고 보는 점이 문제이고, 고의의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중과실을 증명하여 고의에 준한 취급을 하기 위해 중과실을 면책사유로 보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도 보험자의 책임을 지는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이 견해를 취하기는 어

4) 박세민, 「보험법(제5판)」, 박영사, 2019, 285면.

5) 강대섭, “고의·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와 보험자의 면책-면책의 근거에 관한 통론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제2집, 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 1995, 219면 이하 참조

6)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제9판)」, 박영사, 2015, 137면에서는 도덕적 위험에 해당 하는 사고는 정책적으로 보호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럽다.

두 번째로 신의칙설 또는 공서양속설을 들 수 있다. 이는 보험계약을 사행계약으로 이해하고 보험계약에서는 그 특수성에서 고도의 신의성실이나 선의성이 요구되는데,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은 신의칙이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보는 견해이다.⁷⁾ 그런데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을지, 보험계약의 수익을 얻는 자가 아닌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자가 보험의 이익을 얻는 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공서양속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다음으로 주관적 위험배제설을 들 수 있는데, 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위험을 인수할 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와 같은 주관적인 위험사정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⁸⁾ 즉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에 특정한 원인에 의한 사고를 부담할 위험에서 배제하는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도 그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중과실로 인한 사고가 보험자가 배제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외에도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가혹하고 보험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인위적인 보험사고가 빈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보험정책설을 들 수 있다.⁹⁾

우리나라의 학설은 대체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을 위와 같은 우연성 흠결, 신의칙이나 공서양속 위반, 주관적 위험의 배제 또는 보험정책적 요구 등 어느 하나의 이유로서만 설명하지 않고, 복합적인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는 공익, 선량한 풍속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보험정책적으로도 보험사고 및 손해 발생의 결과를 야기한 자가 책임을 지도록 함이 타당하다거나 보험사고의 우연성 결여로 인한 보험계약의 도박화 및 보험범죄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⁰⁾

7) 이 입장을 취하는 견해는 거의 없다. 채이식, 「상법강의(하)(개정판)」, 박영사, 2003, 505면; 장덕조, 「보험법(제4판)」, 법문사, 2018, 164쪽 참조.

8) 양승규, 「보험법(제5판)」, 삼지원, 2005, 141면 참조.

9) 장덕조, 앞의 책, 163면 참조.

10) 양승규, 앞의 책, 142면; 정찬형, 「상법강의요론(제14판)」, 박영사, 2015년, 998면; 최준선, 앞의 책, 136면; 장덕조, 앞의 책, 163~164면; 박세민, 앞의 책, 285면.

판례는 상법 제659조의 취지에 관하여 손해발생 원인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있다고 하여 위험제외설을 취한 예가 있고,¹¹⁾ 자살이나 고의적인 자상행위 또는 보험수익자에 의한 피보험자의 살해 또는 상해행위는 비윤리적이고 이에 대한 손해보상은 보험계약 당사자의 선의성 및 윤리성에 반한다고 보거나¹²⁾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한 보험의 면책조항은 그러한 사고는 보험사고로서의 우연성을 결여하고 이러한 사고는 사기적 범행을 조장하는 도덕적 위험을 내포한다는 이유 외에 보험의 선의계약성과 공익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여¹³⁾ 신의칙설 또는 공서양속설을 따르고 있다.

보험실무에서는 대부분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있고, 자동차보험(대인배상 I)에서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직접청구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¹⁴⁾ 보증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를 법정면책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다(제726조의6 제2항).

이렇게 본다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보험자의 면책이 보험사고의 우연성 흠결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률적으로 신의칙이나 공서양속에 위반한다거나 주관적인 위험의 배제에서 그 근거를 구하기도 어렵다. 결국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검토하여 판단할 문제이다.

2. 대표자책임이론

1) 인정 여부에 관한 종전의 논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와 법률상 또는 경제상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이를 동일시할 수 있다는 이론을 대표자책임이론이라 하는데,

11) 대법원 1992.1.21. 선고 90다카20654 판결.

12) 대법원 1990.5.25. 선고 89다카17591 판결.

13)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판결.

1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일정한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후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독일에서 이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인정하자는 견해가 없지 않지만,¹⁵⁾ 이를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거나 그 관계가 법정대리인이나 상법상의 지배인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¹⁶⁾ 다만 보험계약자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족이나 고용인 등에 의한 보험사고의 발생에 보험계약자 등이 적극적으로 공모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 등을 함으로써 보험사고의 발생에 보험계약자 등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한다고 한다.¹⁷⁾

보험실무에서는 한동안 화재보험표준약관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적이 있으나,¹⁸⁾ 이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대표자책임이론에 의한 보험자의 면책도 삭제되기에 이르렀다. 이 조항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이들 제3자가 일으킨 보험사고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상법 제663조의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¹⁹⁾ 다만 이 규정의 취지가 이들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일단 보험사고의 발생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개재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으로 보고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에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개재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²⁰⁾ 이 추정을 번복한 때에는 면책조항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으로 보는 한, 이 규정은 제663조의 강행

15) 최기원, 「상법학신론(하)(제14판)」, 박영사, 2005, 643면에서는 해석상의 이론이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적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보험계약자 등과 법률상·사실상 특별한 관계가 있는 제3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16) 양승규, 앞의 책, 144면

17) 양승규, 앞의 책, 144면. 동지 : 정찬형, 앞의 책, 999면(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보험자는 당연히 면책되지 아니 한다); 최준선, 앞의 책, 140면.

18) 2010.3.29.에 개정되기 전의 화재보험표준약관 제4조 제2항.

19) 대법원 1984.1.17. 선고 83다카1940 판결.

20) 화재 발생 당시 피보험자의 가구점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점, 화인(火因) 감정 결과 발화원인이 불명인 점, 화재감식 결과 인위적인 방화로 추정된다는 점, 화재 당일 피보험자의 행적이 의심스럽고 사고 당일 평소보다 일찍 영업을 종료한 점, 피보험자는 과거 3번에 걸쳐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한 전력이 있는 점, 보험금편취의 목적으로 손해사정인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점 등만으로는 화재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방화라고 단정할 수 없다(서울고법 2006. 9. 29. 선고 2005나65601 판결). 상고심(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다72093 판결)에서는 이 점은 문제되지 아니하였다.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였다.²¹⁾

그러나 이와 같이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것은 제663조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친족이나 고용인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점에서 그 추정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나 상법 제663조에 위반되어 무효가 된다는 견해가 있다.²²⁾

판례에서도 법인 이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인 이사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이사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거나 해당 이사가 보험금의 수령에 의한 이익을 직접 받을 수 있는 등 해당 이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의 유발이 회사의 행위와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는 이사, 즉 면책조항에서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실질적인 이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²³⁾

2) 현행 상법상 인정 여부

상법은 손해보험에서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에 범위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그 가족에 대하여 보험대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682조 제2항 본문). 상법은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제한하면서도,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험대위를 인정하고 있다(제682조 제2항).²⁴⁾

상법 제682조 제2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그 동거가족이 고의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대위권을 인정하거나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었다.²⁵⁾ 또한 상법 개정 전(2014.3.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판

21) 대법원 1984.1.17. 선고 83다카1940 판결.

22) 박세민, 앞의 책, 300면; 장덕조, 앞의 책, 170면; 한기정, 『보험법(제2판)』, 박영사, 박영사, 2018, 306면.

23) 대법원 2005.3.10. 선고 2003다61580 판결.

24) 동거가족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도록 하자는 견해도 있었다.

25) 박세민, 앞의 책, 498면 주 315 참조.

레도 보험대위가 제한되는 제3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은 (구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동거가족과 같이 강한 일체성을 가진 신분적·경제적 공동생활체에 속하지 않는 제3자에 대하여도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²⁶⁾ 그 이유는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피보험자 이외의 제3자를 상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피보험자가 자신의 동거가족에 대하여 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 취득하여 행사하도록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어 보험제도의 효용을 현저하게 해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²⁷⁾

판례는 이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가족이 아니더라도 제682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²⁸⁾ 그 입법취지에서 보면 사고를 야기한 자의 행위를 용서하거나 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²⁹⁾ 그러나 이 판례는 상법 개정 전의 것이고, 현행 상법은 제3자의 범위를 분명히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볼 수 없을 것이다.

상법 제682조 제2항의 규정은 손해보험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대표자책임이론을

26) 보험계약자 등에게 단순히 고용된 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약관 조항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이 단순한 고용인에게 야간에 천공기를 운전하게 하였고 그 고용인의 중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동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8.4.28. 선고 97다11898 판결). 왜냐하면 단순히 고용된 자에게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것이 곧바로 보험계약자 등의 중과실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야간에 그와 같은 작업을 시킨 것만으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사고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27)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4다224233 판결에서는 피보험자의 동거가족과 같이 강한 일체성을 가진 신분적·경제적 공동생활체에 속하는 제3자에 대해서는 보험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보험자가 속한 관리단대표자회의의 위탁을 받아 건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는 이에 속하지 않으므로 보험대위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28) 박세민, 앞의 책, 498면.

29) 박세민, 앞의 책, 498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하여 손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한다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을 것이므로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는 의미이다.

3. 사망보험의 경우 고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 보험자면책의 문제

상법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면서도,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중과실로 생긴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제732조의2 제1항). 이 규정은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에도 준용된다(제739조와 제739조의3).

보험계약자 등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유는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정책적으로 유족 또는 피보험자 본인의 경제적 생활의 보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 상법은 고의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는데, 생명보험의 저축적·보장적 기능을 고려할 때 피보험자의 고의를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³⁰⁾

헌법재판소는 사망보험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자가 면책될 수 없도록 한 상법 규정이 영업의 자유 또는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이러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인 인보험의 보험계약자 측, 특히 생명(사망)보험의 보험수익자로 되는 유족의 생활보장을 도모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별이 상대적이며, 그 경계가 모호한 데다가 보험계약자 측이 현저히 약자의 지위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는 상반되는 법익과의 균형을 해할 정도로 과도하지는 않아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자의 영업의 자유,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³¹⁾

30) 박세민, 앞의 책, 877면.

31) 헌법재판소 1999.12.23. 선고 98헌가12, 99헌가3·10, 99헌바33·50·52·62·65(병합) 전원재판

상법은 사망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었고, 2014년 개정에서는 복수의 보험수익자가 있는 때에 보험수익자의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였다(제732조의2 제2항). 복수의 보험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도입 전에는 이 점이 분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판례는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무효라는 전제에서,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³²⁾ 이 사안에서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로서, 이른바 자기를 위한 타인의 사망보험을 체결한 것인데 상법의 개정 후라도 동일한 사안에서는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보험계약자가 적극적으로 보험금편취의 목적으로 자기를 위한 타인의 사망보험을 체결하고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다른 보험수익자의 보호보다는 이 보험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4. 고의로 인한 사고인지 여부

1) 고의의 의의

보험자의 면책을 가능하게 하는 보험사고의 원인으로서는 ‘고의’란 보험사고의 발생을 인식하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³³⁾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자살, 화재보험에서 방화, 상해보험에서 자해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고의에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가 포함된다.³⁴⁾ 이처럼 고의 개념은 민법에서의 고의와 동일하게 파

부(상법 제732조의2 위헌제청, 상법 제732조의2 위헌소원 사건).

32) 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49064 판결.

33) 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다31401 판결 등.

34) 미필적 고의라 함은 행위자가 사고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감행하는 정신상태를 말한다. 판례 중에는 출발하려는 승용차 보닛 위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도로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상해 발생에 대한 미필

악하면 된다고 보지만, 민사책임의 발생요건으로서의 고의를 보험자 면책요건으로서의 고의와 동일하게 볼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³⁵⁾

고의는 사고의 원인에 대해 존재하면 족하고 결과의 발생이나 보험금의 취득에 대한 고의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학설은 이에 관해 일치하고 있으며,³⁶⁾ 판례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³⁷⁾ 따라서 보험계약자 등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인식하였으나 그보다 더 중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때에는 그 중한 결과의 발생은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³⁸⁾ 또한 고의란 '보험사고의 발생을 인식하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인 점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쳐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생명보험자의 면책사유로서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망, 즉 자살로 볼 수 없다.

2) 고의행위와 책임능력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정신능력으로서 책임능력을 필요로 한다.³⁹⁾ 이는 책임보험에서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법적 책임 부담을 보험사고로 하는 손해보험이고 보험사고의 대상인 법적 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어떠한 것이 보험사고인가는 기본적으로는 불법행

적 고의를 인정하였고(대법원 2001.3.9. 선고 2000다67020 판결), 피보험자가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3%의 주취상태에서 시동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량을 훔쳐 무단운행을 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여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무면허라고 하여도 그가 차량을 절취한 장소로부터 사고 지점까지 약 10km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운전기능이 없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술김에 열쇠가 꽂혀 있는 차량을 절취하여 운행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고는 피보험자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라기보다 피보험자의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았다(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4997 판결).

35) 장덕조, "면책사유로서의 고의의 의의-미국법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보험법연구6』, (보험법연구회편), 삼지원, 2005, 159면; 장덕조, 앞의 책, 167면.

36) 사고의 원인뿐만 아니라 결과의 발생을 아는 것까지 필요하다. 장덕조, 앞의 책, 167면 등.

37) 대법원 2001.3.9. 선고 2000다67020 판결.

38)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다62628 판결(승용차 보닛 위에 었드린 채 매달려 있는 사람을 떨어지게 할 생각으로 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차에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경우 피해자의 상해에 대해서는 고의를 인정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사망하리라는 것까지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는 피보험자인 가해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다).

39) 대법원 2001.4.24. 선고 2001다10199 판결; 장덕조, 앞의 논문, 163면 참조.

위의 법리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⁴⁰⁾

책임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의 보험약관에서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규정된 경우에, 고의행위라고 구분짓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정신능력으로서의 책임능력이 전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피보험자가 책임능력에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고의행위를 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이어야 하고, 따라서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손해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⁴¹⁾ 마찬가지로 만취한 승객이 판단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위험을 자초한 행위를 고의라고 보기 어렵다.

3) 증명책임

고의는 주관적 심리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사고를 인식·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고, 무엇이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⁴²⁾

고의의 증명은 법관의 심증이 확신의 정도에 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확신이란 자연과학이나 수학의 증명과 같이 반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대적 정확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의 일상생활에서 진실하다고 믿고 의심하지 아니할 고도의 개연성을 하는 것이고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을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⁴³⁾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행위가 보험사고의 다른 원인과 경합하는 경우에 보험자가 면

40) 민법에서는 고의는 과실과 함께 책임발생의 원인이 되는 점에는 과실과의 엄격한 구별이 문제되지 않음에 반하여, 책임보험에서는 면책사유로서 고의는 과실과의 구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장덕조, 앞의 논문, 159면).

41) 대법원 2001.4.24. 선고 2001다10199 판결. 이 판결에 대해서는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상법 제659조의 고의로 보기에는 책임능력이 없다고 하는 점에서, 적어도 가해자의 책임을 확정함에 있어서 그 책임을 부정하거나 최소한 과실상계는 있었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장덕조, 앞의 책, 165면).

42) 대법원 2004.8.20. 선고 2003다26075 판결.

43) 박세민, 앞의 책, 297면; 법학전문대학원 상법교수 17인, 『상법판례백선(제8판)』, 법문사, 2021, 1015면.

책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행위가 단순히 보험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행위가 보험사고 발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 원인이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⁴⁴⁾

Ⅲ.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자살과 보험자의 면책

1. 생명(사망)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서 자살

생명보험표준약관 제5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로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를 정하면서도,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및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약관에 의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근거를 신의칙 또는 공서양속으로 보는 한 이러한 약정이 이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즉 피보험자의 유족 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의칙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즉 피보험자의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하고 있으나,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험금지책임 인정하고 있다. 종전 판례도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서 정하고 있는 경우, 자살이란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한다고 본다. 그러

44) 대법원 2004.8.20. 선고 2003다26075 판결(그러므로 자신이 유발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동승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동승자에 대한 수혈을 거부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수혈거부가 사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수혈거부행위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⁴⁵⁾

2. 자살의 증명책임과 정도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보험자가 달리는 기차에 부딪쳐서 사망하였으나 그가 자살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물증이나 자살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다면,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입증되었다거나, 피보험자가 달리는 기차에 쉽게 치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그 결과를 스스로 용인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여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⁴⁶⁾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사유로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⁴⁷⁾ 이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신병을 비관하는 낯두리를 하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린다는 등의 객기를 부리다가 마침내 음주로 인한 병적인 명정으로 인하

45)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대법원 2015.6.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

46) 대법원 2020.3.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47) 대법원 2008.8.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여 심신을 상실한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에 이른 행위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보험약관에서 재해의 하나로 규정한 '추락'에 해당하여 사망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되고,⁴⁸⁾ 보험자의 면책사유로서 자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입이 금지된 지하철역 승강장의 선로로 내려가 지하철역을 통과하는 전동차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⁴⁹⁾ 부부싸움 중 극도로 흥분되고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경우도 자살이라고 할 수 없다.⁵⁰⁾ 그러나 공제계약의 피공제자가 직장에 병가를 신청하고 병원에 찾아가 불안, 의욕저하 등을 호소하면서 직장을 쉬기 위하여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거듭 요구하며 병명이 '우울성 에피소드'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주거지 인근 야산에서 처 등에게 유서를 남긴 채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경우에는 발병시기, 망인의 나이, 평소 성격 등에 비추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였다.⁵¹⁾

보험자가 부담하는 자살의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최근 판례는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는 보험자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는 입장을 내어놓았다. 이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자살하였다는 사실이 문제된 사안에서, 주요우울장애⁵²⁾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⁵³⁾이 확립되어 있

48) 대법원 2008.8.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동지 : 대법원 2015.6.23. 선고 2015다5378 판결.

49) 대법원 2001.11.9. 선고 2001다55499,55505 판결.

50) 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51)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52) 신체적 및 정신적, 행동적인 변화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심한 경우는 기분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있는 우울장애라고 할 수 있고, 정신의학에서는 우울한 상태란 사고의 형태나 흐름, 사고의 내용,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며, 이렇게 기분의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우울삽화(Depressive episode)라고 하며, 정도가 심한 삽화를 주요우울삽화라고 하여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로 진단한다.

53) 미국정신의학협회에서 발행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매뉴얼 제5판(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DSM-5)은 주요우울장애에 대해서, ① 하루 중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에 대해 주관적으로 보고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될 것, ②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 거의 또는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됨 등을 포함한 9개의 인지, 행동, 신체적 증상을 제시하면서, '① 또는 ②가 포함된 5개 이상의 증상이 2주 연속으로 지속되며 이전의 기능 상태와 비교할 때 변화를 보이는 경우'라고 진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 사고 또는 자살시도나 자살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하나의 증상으로 포함되어 있고, 한편

음을 들어, 피보험자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고, 만약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보험자를 치료하였던 정신과 전문의의 견해 및 그 바탕에 있는 의학적 판단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보험자가 자살할 무렵 주변 사람들에게 걸으로 보기에 이상한 징후를 보이지 않았거나 충동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자살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을 내세워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음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하였다.⁵⁴⁾

3. 정신질환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자살과 보험자의 면책 약정

학설은 대체로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악의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보험사고의 우연성에 반하고 반사회적인 법률행위가 되므로 무효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⁵⁵⁾ 그러나 다른 사정이나 원인 때문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반사회적인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의 또는 악의에 의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피보험자의 자살의 경우 보험계약체결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진다고 정하는 약관은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⁵⁶⁾

계절성 동반의 주요우울장애에 대해 주요우울장애에서 주요우울삽화의 발병과 한 해의 일정한 기간 사이에 규칙적인 시간관계가 있을 것 등의 진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는 DSM-5에서 언급한 증상의 개수 등을 고려하여 우울장애를 경도, 중등도, 고도(중증)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울병 에피소드가 뚜렷하며 의기 소침, 특히 자부심의 소실이나 죄책감을 느끼고 자살충동이나 행위가 일반적이며 많은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를 고도(중증)로 보고 있다.

54) 대법원 2021.2.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55) 정찬형, 앞의 책, 998면 및 법학전문대학원 상법교수 17인, 앞의 책, 1016면에서는 고의에 의한 경우에도 보험금지급책임을 약정하는 것은 상법 제659조의 입법취지로 보아 무효라고 하나, 이를 인보험에까지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56) 채이식, 앞의 책, 509면. 실무에서는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2021.7.1. 개정된 생명보험표준약관 제5조 제1호 나), 입법례로서 프랑스 보험법전 제132-7조은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최준선, 앞의 책, 137면 참조.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하고 있더라도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로서 자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정신질환에 의한 사망을 면책사유로 한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즉 판례는 면책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데에 있고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만일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러한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판시하였다.⁵⁷⁾

IV.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662조). 상법은 보험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이고(제658조),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해서는 정함이 없다. 민법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잡고 있다(민법 제166조 제1항). 이러한 규정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 소멸시효에 관한 쟁점이 되고 있다.

2.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대립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해서는 보험사고 발생일, 보험사고를 안

57) 대법원 2015.6.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날 및 보험금지급유예기간종료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먼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한다는 견해는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일종의 조건부채권인 보험금청구권이 구체적인 금전급부청구권으로 바뀌고, 이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본다. 판례가 소멸시효의 기산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취하는 입장이다. 이 견해는 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동안 객관적인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그 시기는 객관적인 사실상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주관적인 용태에 따라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두 번째로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로부터 기산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 견해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전제에서 권리의 발생, 즉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권리행사자의 인식 내지 인식가능성을 요건으로 하는 주관주의 체제가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⁵⁸⁾

세 번째로 보험금지급유예기간종료설을 들 수 있다. 상법은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시기에 관하여 일정한 지급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고(제658조), 이 기간 동안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통지한 때는 보험자가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한 후 10일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시효가 진행된다는 견해가 있다.⁵⁹⁾ 이 견해는 상법의 규정에 충실하면서도 소멸시효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는 시효제도의 취지도 살릴 수 있다. 보험사고발생시 설에서는 지급유예기간 중에도 보험금청구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보험자가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이 견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 절차를 해태하거나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지 못한 경우에 시효의 기산점을 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⁶⁰⁾

58) 장덕조, 앞의 책, 160면.

59) 양승규, 앞의 책, 147면; 최한준, “보험금청구권의 법적 개념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제12집, 한국경영법률학회, 2001, 397면 이하 참조.

60) 그렇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보험사고발생의 통지 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정해야 할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었던 때에는 현

판례는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⁶¹⁾ 그렇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다.⁶²⁾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다. 다만 하급판례 중에는 보험자는 보험사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정함에 따라 소장부분이 보험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본 예도 있다.⁶³⁾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약관 또는 상법 제658조에서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을 정하고 있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위 지급유예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지는 않고 있다.⁶⁴⁾

이와 달리 판례 중에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라고 할 것이지만, 약관 등에 의하여 보험금청구권의 행사에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절차를 마친 때, 또는 채권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실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로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61) 대법원 1993.7.13. 선고 92다39822 판결; 대법원 2001.4.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등.

62) 대법원 1993.7.13. 선고 92다39822 판결; 대법원 2001.4.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다52359 판결(상해의 후유장해가 문 제되는 경우) 등.

63) 자동차사고의 피보험자가 운전 중에 사망하였으나 제3자가 운전 중에 사고를 낸 것으로 기소되었다가 무죄선고를 받은 후에 피보험자의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입장을 취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1992.7.21. 선고 92나 9045 판결), 이 사건의 상고심에서는 이를 배척하고 소장부분이 보험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았다(대법원 1993.7.13. 선고 92다39822 판결).

64) 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다59383,59390 판결. 동지 : 정진옥,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의 소멸사유”, 『경성법학』 제4호,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260~261면.

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질차를 마치는 데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고 있다.⁶⁵⁾

3.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판단에 관한 판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 과연 어느 시점에서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몇가지 판례의 사안에서 이를 살펴본다.

1) 자동차사고의 경우

甲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자동차를 충돌함으로써 다른 자동차의 운전자 乙이 사망하였으나 乙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사고처리가 잘못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기 전이라도 甲으로서의 자신의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아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한 사실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甲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한 甲의 자(子)가 그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함으로써 받게 되는 사망보험금의 상속인이 甲 외에 丙(사망한 자의 모(母))이 있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처인 丙이 사고의 원인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丙으로서의 사고처리가 잘못되었음이 밝혀진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⁶⁶⁾ 잘못된 사고처리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았을 개연성이 있으므로⁶⁷⁾ 丙이 보험회

65) 대법원 2006.1.26. 선고 2004다19104 판결.

66) 사고처리에 관한 수시기관의 결과에 대해 을의 가족이 갑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에서 법원은 갑이 운전하던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인정하여 갑에 대하여 을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1998.3.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67)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갑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면 자손사고의 경우 갑이 운전하던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자신의 보험자(A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을이 운전하던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을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B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파보험자는 자신의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갑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한 사고일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⁶⁸⁾

2) 단체보험과 자살의 경우

단체상해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피보험자의 '우울증으로 인한 단순자살'로 경찰이 내사종결 처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개인보험보다 보험계약의 존재와 보험계약 내용을 파악하여 보험금 청구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⁶⁹⁾ 그리고 단순 자살이 아니라 보험자면책의 예외사유인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쳐 사망한 경우(자살)'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인 상속인이 이를 알 수 있거나 그 소명자료를 갖추기 어렵다고 볼 사정들이 존재한다.

이 경우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당시에는 경찰이 '우울증으로 인한 단순자살'로 내사종결 처리한 사정이 있어 보험자면책의 예외사유(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이를 알 수 있거나 그 소명자료를 갖추기 어렵다고 볼 사정들이 존재한다.⁷⁰⁾ 그렇지만 자살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가 공무상 생긴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이어 행정소송도 제기하였던 이 사건에서,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고 있다.

경우 운전자인 갑과 자동차에 동승한 갑의 가족도 피보험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68) 대법원 2001.4.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69) 그 이유는 단체보험에서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교부하고, 피보험자인 구성원 개인에 대하여는 보험증권을 교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상법 제735조의3, 제739조).

70) 보험약관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요건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보험자가 면책되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험자의 면책사유 및 그 예외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금청구권자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보험계약이 사행계약의 속성상 도덕적 위험을 초래하고 보험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법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자를 면책시키고 있다. 신의칙이나 공서양속 또는 보험정책적 이유에서 볼 때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 보험사고가 고의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보호를 위하여 일반 민사법과는 다소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인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쳐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또는 그 결과로 질병을 얻은 경우에도 보험자는 면책되지만,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져야 한다. 사망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자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자살을 증명하여야 하고,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의 자살이 심신상실 등의 사유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덕적 위험 또는 보험사기의 방지 명목으로 증명책임을 엄격히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쉽게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는데,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한다.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는, 특히 단체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또는 그 상속인)가 보험증권을 교부받지 못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존재나 내용을 알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 신중하여야 한다. 보험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 보험에 의한 생활보장을 필요로 하는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도 보험제도의 운용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참 고 문 헌

- 강대섭, “고의·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와 보험자의 면책·면책의 근거에 관한 통론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제2집, 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 1995.
- 김성태, 『보험법총론』, 법문사, 2001.
- 박세민, 『보험법(제5판)』, 박영사, 2019.
- 법학전문대학원 상법교수 17인, 『상법판례백선(제8판)』, 법문사, 2021.
- 양승규, 『보험법(제5판)』, 삼지원, 2005.
-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제9판)』, 박영사, 2015.
- 장덕조, 장덕조, 『보험법(제4판)』, 법문사, 2018.
- 장덕조, “면책사유로서의 고의의 의의-미국법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보험법연구6』, (보험법연구회편), 삼지원, 2005.
- 정진옥,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소멸사유”. 『경성법학』 제4호,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 정찬형, 『상법강의요론(제14판)』, 박영사, 2015.
- 채이식, 『상법강의(하)(개정판)』, 박영사, 2003.
- 최기원, 『상법학신론(하)(제14판)』, 박영사, 2005.
- 최준선, 『보험·해상·항공운송법(제10판)』, 삼영사, 2016.
- 최한준, “보험금청구권의 법적 개념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제12집, 한국경영법률학회, 2001.
- 한기정, 『보험법(제2판)』, 박영사, 박영사, 2018.

<국문초록>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고가 생긴 경우 그 발생 원인을 불문하고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진다. 그러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반면에 인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논문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를 면책시키는 법리의 이론적 근거 또는 존재이유를 검토한다.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치거나 사망하게 하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는 법리의 타당성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에 대해서도 특별히 고려할 사항이 있는지를 논의한다.

보험계약이 사행계약의 속성상 도덕적 위험을 초래하고 보험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자를 면책시킬 필요가 있다. 신의칙이나 공서양속 또는 보험정책적 이유에서 볼 때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보험사고가 고의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보호를 위하여 일반 민사법과는 다소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는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 신중하여야 한다.

주제어 :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 보험자의 면책사유, 자살, 심신상실, 소멸시효

<Abstract>

Issues on Intentional Injury Exclusion Clause

Kang, Dae Seob^{*}

In the event of an accident stipulated in the insurance contract, the insurer shall be liable to pay the insurance proceeds regardless of the cause. However, if the accident insured is caused by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of the policyholder, the insured, or the beneficiary, the insurer shall not be liable to pay the insurance proceed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personal insurance, the insurer shall be liable to pay the insurance proceeds even if the accident insured occurs due to gross negligence of the policyholder, the insured, or the beneficiary.

This paper examines the rationale or reason of the jurisprudence that exempts the insurer from intentional accident insured caused by policyholders, etc. In life insurance, the validity and limitations of the legal principles that allow the insurer to be held liable even if the policyholder intentionally injures the insured or causes the insured to die will be examined. We will discuss whether there are any special considerations regarding the calculation of the prescription period for insurance claim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of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shall start from the time the accident insured occurs. However, if the claimant objectively could not have known that the accident insured occurred without negligence, the period starts from the time when the claimant knew or could have known that the insured event occurred. In the case of group life insurance, the beneficiary (or heir) should prove that the existence or content of the insurance contract cannot be known because the beneficiary does not receive an insurance policy, or that the insured has harmed himself in a state where he (or she) cannot make a free decision. But it is sometimes difficult to do. In order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claimant, it should not be easily admitted that he knew or could have known that the insured accident occurred.

Keywords : Intentional Injury, Insurer's Exclusion, Suicide, Insanity, Extinctive Prescription

^{*} Professor, School of Law, Pusan National University.

